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7-09-22

서 울 고 등 법 원

제 3 행 정 부

판 결

사 건	2017누35990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
원고, 피항소인	A
피고, 항소인	1. [redacted]군수
	2. [redacted]시장
	3. [redacted]시장
제 1 심 판 결	[redacted]지방법원 2017. 1. 10. 선고 2016구합637 판결
변 론 종 결	2017. 6. 15.
판 결 선 고	2017. 6. 22.

주 문

1.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.

2.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
청구취지 및 항소취지

1. 청구취지

피고들이 원고에게 한 [별지1] 목록 기재 각 해당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(각 가산세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7-09-22

포함)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.

2. 항소취지

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.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.

이 유

1. 제1심 판결의 인용

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제5쪽 제18행의 "인도증 사용되어야만 하는데"를 "인도증을 사용하여야만 하는데"로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,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,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.

2. 결론

그렇다면,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데,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 판사 문용선

판사 김복형

판사 남양우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7-09-22

[별지 1]

목록

(금액 단위: 원)

순번	피고	처분일	취득세	가산세	소계	농어촌 특별세	가산세	소계
1	[redacted]군수	2016. 10. 5.	970,000	301,370	1,271,370	97,000	10,730	129,600
2	[redacted]시장	2016. 10. 10.	594,000	160,850	754,850	59,400	4,200	75,050
3	[redacted]시장	2016. 10. 12.	143,000	54,030	197,030	14,300	2,540	16,840
4	[redacted]시장	2016. 10. 12.	28,600	12,540	41,140	2,860	680	3,540
5	[redacted]시장	2016. 10. 12.	253,000	114,730	367,730	25,300	6,410	31,710
6	[redacted]시장	2016. 10. 12.	830,000	400,060	1,230,060	83,000	23,400	106,400
7	[redacted]시장	2016. 10. 12.	682,000	337,110	1,019,110	68,200	20,070	88,270
8	[redacted]시장	2016. 10. 12.	1,232,200	697,420	1,929,620	123,220	45,090	168,310
합 계					6,810,910			619,720

끝.